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경민



여수시 조례 제2236호

붙임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여성문화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중”을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자가”를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교육수강 등을 위해”를 “교육수강 또는 공익성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 중 “전대하지 못한다”를 “대여할 수 없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회관내”를 “회관 내”로 한다.

제10조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주부

10. 「여수시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3의 수강료 반환기준”을 “수강을 취소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해당 기준”으로 한다.

1. 시설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14조 중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예에”를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의 예에”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개정안]

## 수 강 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기술교육	1인1과목 1개월	15,000	
취미교육	1인1과목 1개월	10,000	
교양강좌	-	무 료	
유아수탁실	수강생의 교육시간 내	무 료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여성문화회관의 <u>관리운영</u>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p>	<p>제1조(목적) ----- ----- <u>관리·운영</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여성문화회관의 사용</u>”이란 <u>제1호의 시설중</u> 일부를 이용하여 각종 회의, 행사, 전</p> <p>3.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사용</u>”이란 <u>제1호의 시설 중</u> ----- -----</p> <p>3.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사용허가) ① (생략)</p> <p>②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p>	<p>제3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u> ----- -----</p>
<p>제4조(사용제한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p> <p>6. 그 밖에 시장이 <u>교육수강 등</u>을 위해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p> <p>②·③ (생략)</p>	<p>제4조(사용제한 등) ①----- ----- -----</p> <p>6. ----- <u>교육수강 또는</u> <u>공익성을 고려하여</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p>	<p>제8조(사용권의 양도금지) ----- ----- -----</p>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① (생략)

②시장은 사용료 및 수강료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회관내 일정한 장소에 상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신설>

<신설>

<신설>

8. (생략)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징수한

1. 시설의 고장 및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3. (생략)

대여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관 내 -----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주부

10. 「여수시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  
-----

1. 시설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2.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3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예에

② -----  
----- 수강을 취소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해당 기준-----  
-----  
-----  
-----  
-----  
-----  
-----  
-----  
-----.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범위 안-----  
-----.

제14조(준용) -----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의 예에